

임금정책 쟁점에 대한 이해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임금정책 주요 쟁점

	임금수준	임금구성	임금(결정)체계
정의	✓ 임금의 높고 낮은 정도	✓ 고정급과 변동급의 구성 비중	✓ 기본급 결정 원리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적정 수준 ✓ 임금격차 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비중 ✓ 수당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의 타당성

임금수준

임금수준 현황

➤ 평균임금

- ✓ 월 256만원(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8)
- ✓ 월 258만원(지역노동실태조사, 2018.4)
- ✓ 월 290만원(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
- ✓ 월 342만원(사업체노동력조사, 1인 이상 민간, 2018)

- (이유) 저임금 노동 포괄 범위에 따른 차이
- 사업체노동력조사. 파견, 용역 제외. 공무원 및 농림어업노동자 제외

➤ 중위임금

- ✓ 월 200만원, 시급(임금총액) 11,513원(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
- ✓ 월 210만원, 시급(임금총액) 11,513원(지역노동실태조사, 2018)
- ✓ (참고) 시급(임금총액) 12,897원(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

➤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 ✓ 월 133만원 미만, 시급 7,675원 미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
- ✓ 월 140만원 미만, 시급 7,675원 미만(지역노동실태조사, 2018)

임금격차 현황(1)

	월 임금총액(만원)					시간당 임금(원)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평균값	223	230	237	242	256	12,533	12,918	13,464	13,722	14,607
정규직	289	297	306	306	321	15,918	16,207	16,795	16,698	17,523
비정규직	144	148	151	156	163	8,461	8,893	9,312	9,676	10,400
비정규직 임금비중 (정규직=100)	49.9	49.8	49.2	51.0	50.7	53.2	54.9	55.4	58.0	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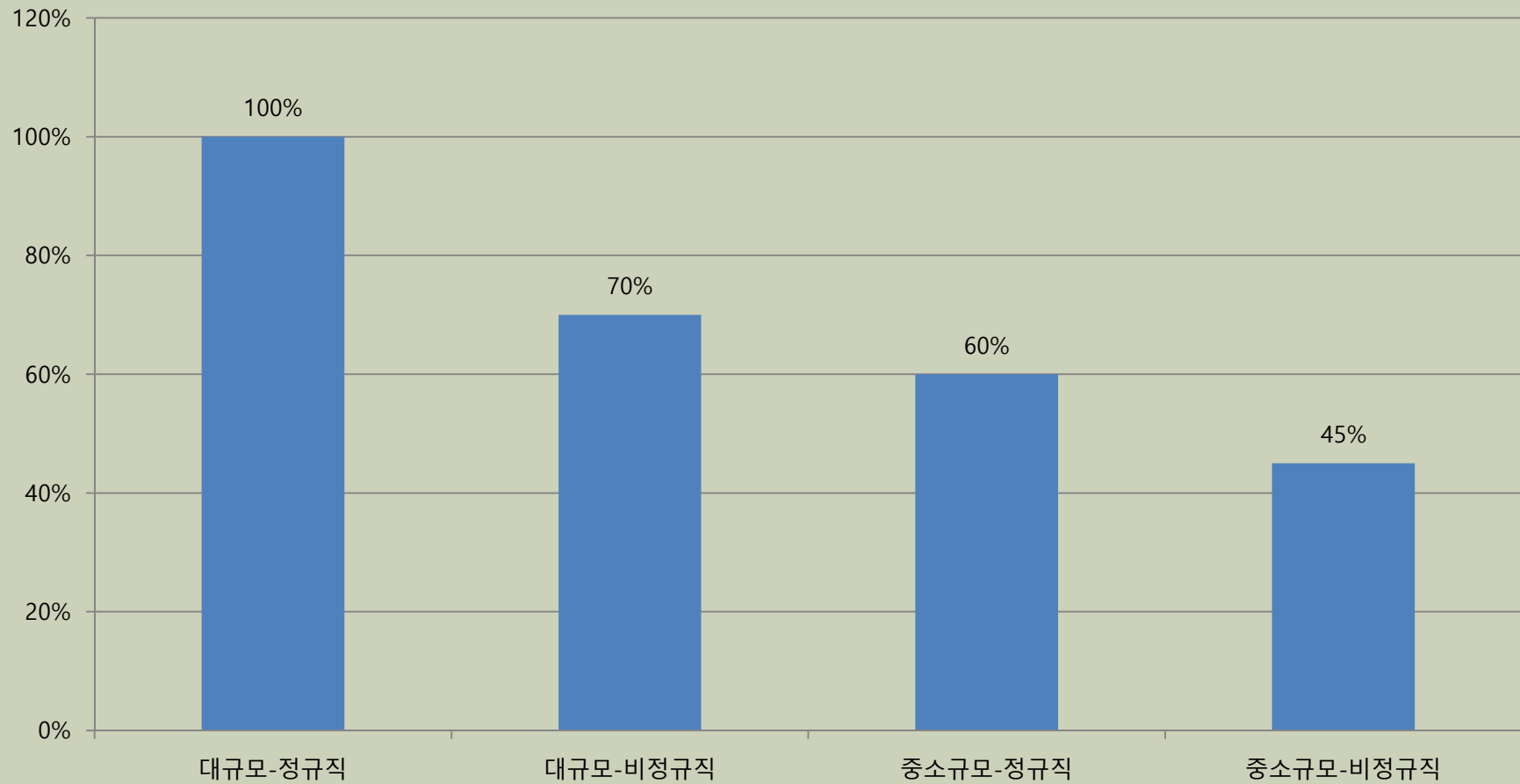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8. 8)

임금격차 현황(2)

	월 임금총액(만원)					시간당 임금(원)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평균값	223	230	237	242	256	12,533	12,918	13,464	13,722	14,607
하위 10%	80	80	80	80	90	4,989	5,410	5,757	5,987	6,908
50%	190	200	200	200	210	10,234	10,362	10,788	11,513	11,513
90%	400	420	450	450	454	23,026	23,602	25,041	24,753	25,905
P9010	5.00	5.25	5.63	5.63	5.04	4.62	4.36	4.35	4.13	3.75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8. 8)

임금격차 현황(3)



▪ 2017년 기준

임금구성

임금구성 현황

- 201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총액 중 기본급 비중 55% (한겨레, 2018.12.25)
 - ✓ 비정규직, 기본급 비중 74%
 - ✓ 1~4인 사업체, 기본급 비중 88%(정규직), 97%(비정규직)
- 공공기관, 기본급 비중 72%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임금표(임금테이블) 없는 사업장 35%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18)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구성과 임금수준

저임금 조합원(2018년 현재)

전체 조합원(2017년 현재)

평균임금	월 216만 원
기본급 비중	81%
* 출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삭감효과 분석(이창근 2018.5)	

평균임금	월 392만원
기본급 비중	57%
* 출처: 민주노총 임금실태조사 2018.2	

- ✓ 간호사 기본급 비중 49%, 병원 기능직 기본급 비중 51%
-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2016)

저임금 조합원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	금액	비중 ¹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포함)	2,159,722	106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제외)	2,036,933	100
기본급	1,654,000	81.2
통상수당	100,825	4.9
근속수당	47,715	2.3
복리후생	136,497	6.7
초과근로수당	122,789	6.0
연월차수당	61,211	3.0
그 외 기타수당	55,361	2.7
상여금	95,834	4.7

주 1) 비율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대비 상대적 수준임.

전체 조합원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년도	평균 부양가족수	월평균(단위: 원, %)		
		임금총액	정액급여	기본급
2015	3.65	3,948,773(100)	2,819,298(71.3)	2,080,665(52.7)
2016	3.57	3,866,687(100)	3,189,431(82.5)	2,205,705(57.0)
2017	3.36	4,199,400(100)	3,257,500(77.6)	2,312,000(55.1)
2018	3.46	3,917,147(100)	3,161,137(80.7)	2,230,300(56.9)

1) 임금총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의 평균값임.

2) 정액급여는 기본급+제수당을 합한 평균값임.

3) ()는 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한 해당 급여의 비중임.

임금체계

임금(결정)체계 유형

➤ 임금체계: 임금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기준과 방식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결정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능력 ▪ 지식, 기술, 숙련,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자의 연공 ▪ 근속기간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업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능력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기간 중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교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밀하고 수용성 높은 숙련심사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임금적 성격

임금(결정)체계 현황(1)

- 2015년 현재, 65% 사업체에서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
 - ✓ 2009년 72% ➡ 2015년 65%(노동부 보도자료, 2016)
- 2014년 현재, 55% 공공기관에서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
(한국노동연구원, 2014)
 - ✓ 호봉제 실시 기관 중 직급별 호봉제 87%, 단일호봉제 13%
 - ✓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35%
 - ✓ 고위직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100%(정동관 외, 2016)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
(한노사연, 2018)
 - ✓ 4개 기관은 직무급 도입
 - ✓ 연공급 도입 21개 기관 중 7개는 일부 직종에 대해 직무급 도입

임금(결정)체계 현황(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직무급 도입 시도

- ✓ 5개 직종(청소, 경비, 조리, 시설관리, 사무보조)
- ✓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등급 설정(5등급)
- ✓ 부차적으로 숙련형성기간을 고려한 각 직무등급별 승급단계 설정(6단계) - 자동승급이 아닌 심사를 통한 승급
- ✓ 독일식 '직무(숙련)급'

직무등급	직종				
	청소	경비	조리	시설관리	사무보조
1등급	일반청소	시설경비			단순사무보조
2등급	전문청소	전문경비	조리원	일반시설	일반사무보조
3등급			조리사	종합시설	행정사무보조
4등급				전문시설	
5등급					

임금(결정)체계 현황(3)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
 - ✓ 5호봉(농림축산식품부) - 35호봉(경찰청)
- 근속 기간 증가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기본급 상승
 - ✓ 최소 호봉 기본급과 최대 호봉 기본급 차야: 28만4천원(농림축산식품부, 최대5호봉) - 165만8천원(기획재정부, 최대31호봉)
 - ✓ 최소기본급 대비 최대기본급 배수: 1.2배(농림축산식품부) - 2.14배(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최대31호봉)
- 연공급 도입 21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일부 직종에 대해 직무급 도입
 - ✓ 기획재정부 - 에디터, 연구원, 운전원
 - ✓ 국세청 - 청소, 시설, 경비
 - ✓ 행정안전부 - 청소, 시설

**대안적 임금정책과
대응방향**

공공운수노조 대응방향

➤ 3원칙: 생계비, 공정성, 연대성

- ✓ 생활급으로 임금하한선 설정
- ✓ 기본급 비중 확대
- ✓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 구분과 기준 설정

➤ 확장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중층적 교섭구조: 노정 중앙교섭, 업종별 교섭, 기관별 교섭

금속노조 대응방향

- 임금극대화 전략에서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 축소 및 저임금 노동자 임금안정성 확보' 전략으로 전환
- 산별표준임금제 추진
 - ✓ 고정급성 임금영역은 초기업단위 교섭
 - ✓ 성과상여의 배분은 사업장단위 교섭

보건의료노조 대응방향

➤ 산업·업종별 표준임금체계 마련

- ✓ 산업·업종별로, 기본급체계 통일
- ✓ 기본급체계는 ▲기본급 ▲근속 ▲의료기관 종별 환자중증도와 야간·교대근무 등 노동강도 ▲학력, 자격증 등 ▲지역별 물가(교육비, 주택비, 교통비, 기타 생활물가 등) 등을 고려
- ✓ 기본급 비중 확대
- ✓ 임금구성 단순화(각종 수당 표준화)
- ✓ 산업·업종별 최저임금(하한선)과 최고임금(상한선: 최저임금과의 격차 한도) 설정

초기업단위 임금교섭 유형

	기업/지역별 보충교섭	
	불허	허용
단일임금(표준협약)	타워크레인, 플랜트건설, 공공운수 서울지부, 대리운전	토목건축, 학교비정규직
정률 인상	민주택시*	보건의료, 증권업종
정액 인상	희망연대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개별 사업장 단위	금속*, 공공연구	

비고: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언론노조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보통신지회는 유형화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금속노조는 그동안 임금 정액인상 요구를 해 왔으나 2018년 교섭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후상박 원칙을 제시하였음. 대기업 집단과 나머지 사업장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5.3-7.4%로 차등하여 요구하였음.

교육공무직 대응 사례

- 수십 개의 직종을 2개 유형으로 구분
- 초기업교섭(학비연대회의-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각 유형별 기본급 동일하게 결정
 - ✓ 유형1: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 ✓ 유형2: 교육실무원, 사무행정실무원, 조리사, 조리원 등
- 노조 요구에 따라 근속수당 도입
 - ✓ 근속 기간에 따라 3만2천원 씩 상승. 최대 60만원 상한
- 정교한 직종별 직무평가와 분석에 근거해 기본급이 결정되었는지 의문.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나눠 기본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범위 직무급'에 해당.
- 근속수당 도입은 '숙련'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됨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응사례

- 타워크레인 조종사 단일 직종
- 초기 지역별 격차 존재
- 현재는 초기업교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을 통해 전국 단일의 표준임금 결정.
 -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장노동수당 등을 결정
- 성별, 경력 등에 따른 임금차이 없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임금협약

	2017년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2018년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본 임금은 업계 최저임금이며 본 임금 이하로는 근로계약 할 수 없고, 경력에 따라 차등화 한다. 또한 이전 근로계약 시 본 임금 이하로 체결된 임금은 본 임금 이상으로 인상한다.	
시급	19,600원	20,600원
기본급	2,783,000원	2,928,000원
교통비	300,000원	300,000원
체력단련비	200,000원	200,000원
위험수당	200,000원	250,000원
면허수당	256,000원	256,000원
상여금	348,000원	366,000원
계	4,087,000원	4,300,000원

대안적 임금정책과 임금체계

- '적정임금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가 관건
- '초기업단위 교섭'과 연계 필수
- '산별표준임금'은 비교적 동질적인 직종 혹은 직무로 구성된 초기업노조(업종, 직종별 단위)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 ✓ 교육공무직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합니다.